

대구지방법원 2019. 5. 17 선고 2018가단117705(본소), 2018가단117712(반소) 판결
[매매대금 · 위약금 청구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

피고(반소원고)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이승익

변론 종결 2019. 4. 26.

판결 선고 2019. 5. 17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1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: 주문 제1항과 같다.

반소: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는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'C'이란 상호로 푸드 쿽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. 11. 6. 피고에게 매매대금 3,500만 원과 추가금 200만 원 합계 3,700만 원에 C 영업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2,500만 원을 지급하였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간 콜 횟수 7,000회(콜비 175만 원), 가맹점수 25개소 이상을 보장하고, 이후 대구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또는 종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며, 이를 위반하면 이 사건 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배액인 7,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였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 무렵부터 C의 영업권을 넘겨받아 운영하였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존 매매대금 1,200만 원(= 3,700만 원 - 2,500만 원)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. 1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3. 피고의 해지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간 콜 횟수 7,000회(콜비 175만 원), 가맹점수 25개소 이상을 보장하고, 이후 대구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또는 종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.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1개월간 콜 횟수와 가맹점수가 이에 미치지 못했고, 원고가 C에 가맹했다가 탈퇴한 업체에 자신이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다른 배달업체와 거래하자고 제안하는 등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, 위약금으로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5,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2 내지 5, 7, 9호증, 을 제1호증의 1, 2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간 7,000회의 콜 횟수, 25개의 가맹점수에 미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해지 항변 및 위약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① 2017. 11. 6.부터 2017. 11. 30.까지 콜 횟수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6,357회로서, 하루 콜 횟수 평균이 254회(= 6,357회 ÷ 25일, 소수점 미만 버림)이다.

② 피고는 2017. 12. 1.부터 배달대행 프로그램 업체를 원고가 거래하던 D에서 주식회사 E로 변경하였고,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7. 12.부터 기존에 관리하던 푸드 퀵서비스업체와 C를 통합하여 관리하였다(반소장 각주1).

③ 피고는 2017. 12. 1.부터 2017. 12. 5.까지 콜 횟수가 총 209회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을 제3호증을 제출하였는데, 을 제3호증에 기재된 거래처는 F, G, H, I, J 등으로 갑 제5호증에 기재된 C의 가맹점과 일치하지 않는다.

④ 가맹점수가 25개에 미달한다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, 2에 의하더라도 C의 가맹점이었던 K이 가맹에서 탈퇴한 시점이 2017. 12. 5. 이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.

⑤ 갑 제5호증에 기재된 C의 가맹점에서 L와 M을 제외하더라도 가맹점수는 25개이다.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 당시 가맹점수에서 1개월간 콜 실적이 없는 업체를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연수